지도치과의사제도의 현실과 문제점

서울 도봉구 치과의사회
총무 최 종 운

(……不條理일소에 체면이나 어떤관계……)
(……등 과감히 깨쳐야할 때가 온 것……)
(……같다。법 이전에 악랄한 행위는……)
(……근절되는 풍토가 아쉽다。기공소……)
(……에 의원개설신고 없이 유니트·……)
(……체어 설치한 실정에서 과연 무엇……)
(……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몇년동안 齒協의 수임사항으로 넘겨져 오고있는 의료기사법의 개정추진사업은 아직 이렇다 할 "대안조차 뚜렷하지않은것 같다. 지난해 그일부가 편법으로 개정되어 나타난 것이 지도치과의사제도인바 이 제도에 대한 현실과 그 문제점들에 대해 치과의사의 한사람으로써 느낀대로 몇가지 論해 보고져한다.

1. 지도치과의사제도의 현실과 문제점

이 제도는 누구나가 다 알고 있듯이 母法인 의료기사법 제1조사항에 배타되는 그 시행령 제2조1항5호와 시행규칙 제13조1항에 대한 치협의 꾸준한 개정추진 노력의 하나로 겨우 얻어진 임시편법이라 할수 있겠다. 만족스러운 개정은 아니였지만 우선적으로 기공사에 대한 감독 지시를 법적으로 보장받음으로써 부정기공물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있는 계기로 받어들여져온 것이다. 그결과 작년 6월말까지 각 기공소지도치과의사들이 선임조치된 것으로 알고있다.

치과기공사단독개설을 금지시키려했던 1차적인 뜻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하드라도 치과의사들이 직접 기공소에 대하여 지시 감독할 수있는 2차적목적을 시행할수 있는 여건은 성립되었든것이다.

이제 시행후 1년이 지났다.

그나마 부정기공물단속에 대한 지도치의 제도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왔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無用之物化되버리고 있다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본다.

물론 여러가지 문제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도치과의사로 선임된 회원들의 무관심속에 아무런 보수 규정도 없이 이름만 빌려준 처지에 하루 몇 시간씩 기공소에 나가 지시 감독한다는 점도 문제요, 또 원칙적으로 볼때 항상 상주하면서 행하여야 될 업무와 그에따르는 보수를 어떻게 算定할것이며 과연 그러한 보수를 지급하면서도 기공소가 유지될 수 있겠는가하는 점도 문제점으로 되어 왔다. 그렇다고 협회에서 어떤 보장이나 대책을 마련하지도 못했거니와 할 수도 없는 상태인 것이다. 현재 서울에만 40여개 기공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치과의사가 직접 개설하고 있는 두세곳을 제외하고는 지

도 치과의사는 있어도 거의 무관심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 이런 제도만을 도입해 놓고 그 사후책이나 대안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가? 이런 부작용은 애초부터 전혀 예견치도 못하고 일부개정안을받아들였단 말인가? 협회지도자들께서도 당국과의 관계라 여러 어려운 난관이 뒤따랐겠지만 좀더 깊이 그리고 좀더 명확히 일을 추진했어야 했을것이라 생각한다.

현재의 제도로써 할 수있는 최상의 효과란 부정기공물에 대한 단속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물론 지도치과의사들의 적극협조하에서만 말이다. 허나 이러한 부정기공물단속은 지도치의나 당국의 감독에 앞서 기공소운영주들의 양식이 더욱 앞장서야 할 일이다. 다행히 근래 기공사협회자체에서 스스로의 정화운동을 벌리여 자체감사를 철저히하여 위반업소에 대한 고발조치 까지도 불사하겠다하니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 할수있겠다.

2. 그 해결책은 없는가?

지도치과의사제도는 현재나 앞으로나 이는 모순을 안고 있는 제도인 이상 하루빨리 근본적 해결점을 찾을수 있는 의료기사법시행령 및 그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달성 해야하겠다. 理論的으로는 현 제도로써도 기공사단독개업은 불가능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무런 보수나보장이 마련되있지 않은 지도치과의사직을 앞으로는 누가 수락할것인가? 만일 이의 실천을 위해서 지도치의에 대한 의무규정이라도 강제한다면 아무도 참여하지 않을것임에는 분명하다.

그렇게되면 기공소는 치과의사가 직접 개설하지 않는한 유지되기가 어렵다는 결론이 생긴다.

분명히 서울某區에서는 치과의사가 모든 장비를 갖추고 구회원들의 기공물을 제작해 주려는 기운도 있으나 현재 TO문제로 치과의사가 기공소개설에도 발이 묶여있으니 법이전에 치과계의 주역이 과연 누구인지 한심한노릇이다.

치과의사가 기공소개설권을 확보하게되면 자연 부정기공물은 방지될 것이며 나아가서 일반 의료인이 경영하는 병리실험실이나 물리치료실등 처럼 우리도 상호의뢰 활용할수 있게 되는 이점이 많아지는 것이다. 도대체 치과의사가 기공소개설을 할 수 없다는 현실은 역사적으로 크게 기록되어져야 할것이다.

한심한 사례가 또 있다. 어떻게 하여 기공소에 유니트와 체어를 설비하였느냐 하는 문제점이다. 서울 종로구회의 회람을 전해듣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례에 접한 관계자가 사진까지 찍어서 조치중이라고 하니 그곳이 바로 서울의 중심 수송국민학교앞 D기공소이며 거기도 지도치과 의사가 있다. 문제는 지도치과의사에게도 있겠으나 그러한 행위를 자행한 치과기공사가 있다는 것은 악랄한 기만적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체면과 인연등을 正義를 위하여 껄때가 닥아오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지도치과의사제도의 모순을 뜯어고치는 방안은 현행법의 개정을 추진 달성하는 길과 또 하나는 그 개정추진이 어려울 때는 현재의 지도치과의사제도에 대하여 협회 주관하에 지도치의 강제의무규정을 의결하여 지도치의를 수락한 사람들에게 의무를 지우자는 것이다.

의무규정에 대한 캠페인은 협회주도하에 행하되 각지역단위별 지도치의협의체라도 만들면 더욱 좋을 것이다.

보수와 보장없이 의무규정을 이행치못할 사람은 자연 지도치의직을 내놓을 것이고 이러한 추세가 증가해 질경우 기공소운영문제는 여론화 될것이 분명해 진다.

만일 지도치의 들이 전부 그 직을 내놓는 경우도 생각해 볼수 있다. 현행법으로 도치과의사의 기공소설립은 보장이 되있으니 원하는 치과의사들이 그 운영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치과의사만의 기공소설치권한을 찾는 방법의 하나가 될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런 방법은 졸열한 궁여지책이라고 비난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결코 기공사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 이상 외면만 할것이 아니라 한편 연구해 봄직도 하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결대적인 치과의사들의 협조가 필수조건이 되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겠다. 또한 무엇보다도 회원의 대변자인 협회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활동이 없이는 기사법개정이든 궁여지책이든간에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으리라 본다.

다시는 행정적기구축소와 같은 자존심 상하는 푸대접을 초래하지 않기 위하여도 이제도에 대하여서만은 확실한 대책을 강구해 놓아야 하겠다.